제979회 신설·강화규제 예비심사 결과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1	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개정안 (산업통상자원부)	1.단위가격 표시의무자 및 표시의무 품목 추가(강화) ○ 단위가격 표시의무자를 기존 대규모 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 내의 모든 소매점포에서 대규모 온라인쇼핑몰에서 제품을 판매하는 자까지 확대 ○ 단위가격 표시대상품목을 기존 84개 품목에서 114개 품목으로 확대 및 개편 ▶가격표시제 실시요령 제7조의2,제6조	1.비중요
2	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개정안 (농림축산식품부)	1.농업기계 폐기 신고대상(농업용 지게차) 추가(강화) ○ 농업기계 폐기 신고대상에 농업용 지게차 추가 ▶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14조의4	1.비중요
3	중요한 표시·광고사항 고시 개정안 (공정거래위원회)	1.중요정보 표시·광고 대상 추가(강화) <체육시설 운영업종 중요정보 표시·광고 대상에 체육교습업 추가> ○ 체육교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사업장 게시물 및 등록신청서에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과 요금체계(기본요금 및 추가비용), 이용계약 중도해지시 잔여기간의 이용료 환불기준을 표시하고, 광고시에도 해당 중요정보를 포함하도록 함	1.중요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		<여행업종 중요정보 표시 · 광고 대상에 적립식 여행 추가> ○ 크루즈와 같은 적립식 여행의 경우에도 중도해약 환급금에 대한 환급기준 및 환급시기, 총 고객환급의무액, 선불식 할부거래 관련 자산 및 이와 관련해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(검토)를 받았는지 여부, 고객불입금에 대한 관리방법 등을 사업장 게시물(홈페이지), 상품설명서 및 계약서에 모두 표시하도록 하고, 광고시에도 포함하도록 함 ▶표시·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▶중요한 표시 · 광고사항 고시 제V의8,제V의9	
4	디지털 의료 제품 허가 · 인증 · 신고 심사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(식품의약품안전처)	1.디지털의료제품의 허가 · 인증 · 신고 · 심사 등에 관한 규정(신설) ○ 디지털의료기기 및 디지털융합의약품의 규제적 특성을 고려하여 전주기적 안전관리와 연계된 허가 · 심사 기준 등 마련 ▶디지털의료제품 허가·인증·신고·심사 등에 관한 규정 전체	1.중요
5	입양특례법 시행령 개정안 (보건복지부)	1.입양정보 공개처리기간 연장(강화) ○ 입양된 사람은 아동권리보장원장에게 자신에 관한 입양정보 공개 청구 가능하며, 아동권리보장원은 친생부모의 동의를 받아 기록물을 15일~75일* 내 공개함	1.비중요 2.비중요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		* 친생부모 동의가 필요 없는 정보만을 요청한 경우 15일, 친생부모 동의 파악이 필요한 경우 45일 내 공개하되,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각각 30일 범위 내 연장 가능 – 친생부모 인적사항을 요청하여 친생부모의 동의 파악이 필요한 정보공개 청구의 경우 회신 기간을 현행 15일에서 45일로 연장함 ▶입양특례법 제36조 ▶입양특례법 시행령 제14조 2.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(강화) ㅇ 복지부장관, 아동권리보장원, 업무 위탁기관이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및 건강·범죄경력 등 민감정보 처리를 가능하도록 함 – 입양 관련 수행 업무 및 업무별 수행 주체가 변경됨에 따라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근거를 마련하고, – 아동권리보장원이 입양정보공개에 대한 친생부모 동의 확인을 위해 통신사업자 등에게 친생부모의 전화번호 확인을 요청할 경우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▶입양특례법 시행령 제18조	